

않는 경우 청문 절차 없이 조합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다. 이에 따라, 우리 청에서는 휴면조합 지정 후 1년 이내에 조합활동 재개 신청을 하지 않은 귀 조합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계획하고 있어 알려드리며,

라. 상기 행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명자료를 2014년 10월 24일 (금)까지 우리 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산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 끝.

공 시 송 달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해산명령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기 위하여 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, 이사 및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10월 13일

중 소 기 업 청 장

1. 공시송달 대상 조합

조합명	이사장	설립인가일	소재지	우편물 반송사유
한국방사선 필름판매업 협동조합	<공석>	2001.2.15.	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9길 35, 진일빌딩 303호	수취인 미거주
한국태양광 발전업 협동조합	<공석>	2007.7.23.	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4동 553-15, 2층	이사

2. 통지문 명칭 : 중소기업협동조합 행정처분(해산명령) 사전 통보

3. 통지문 내용

가. 우리 청에서는 귀 조합에 대해 조합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2년 12월 7일 휴면조합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,

나.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에 따르면 휴면조합으로 지정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우리 청에 조합활동재개 신청을 하지